

■ 경비업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5. 12. 23.>

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(제7조의2 관련)

구분	업무
공통	·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
시설경비업무	·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·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· 도난, 화재,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의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
신변보호업무	·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, 시설 답사

비고

시설경비업무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정한다.